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한다(24.2.21.)
- ②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24.2.1.)
- ③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24.2.21.)
- ④ 경산지식산업지구 중소기업 고충, 현장에서 바로 해결된다(24.2.23.)
- ⑤ 유철환 위원장, 수산업계에 이어 농축산업계 설 명절 현장 목소리 청취(24.2.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한다

- 전체 공직유관단체(1,412개) 채용·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절차 등 교육
 - 채용 담당자 전문성 함양으로 채용비리 발생 원천 차단

(‘24. 2.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및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하 전문교육)을 21일부터 실시했다.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전문교육의 경우 총 5,066명이 이수하였으며, 집합교육 설문 응답자 90%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교육이 채용 전문성 강화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전국 1,412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 집합과정(매월, 총 12회)과 함께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https://lms.acrc.go.kr>) 사이버 교육도 개설되어,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상시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실제 공직유관단체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 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2030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의 채용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 “금품·선물 등 신고 당부”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 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적 예방조치 강화 요청

(‘24. 2. 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설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2023년 명절 점검 시 적발 사례》

- ✓ A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을 구매하여 상급자에게 제공
- ✓ B군청 소속 공무원이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하여 수수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 국민권익위,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법인세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24. 2. 21. 국민권익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중소기업 고충, 현장에서 바로 해결된다

- 23일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24. 2. 23. 국민권익위)

산업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경산 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오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입주기업과 관계기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회의에 앞서 경산지식산업단지내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이어진 현장 회의에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정주여건 개선, ▲회의·교육공간 확충,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중소기업 지원책,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대책, ▲건설중장비 수리 주차구역 마련 등 경제자유구역의 고충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고충을 최대한 현장에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산업경기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다 촘촘하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 테마별, 사회적 약자로 대변하는 취약계층 등을 현장 속에서 직접 발로 뛰어 실질적이고 체감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 수산업계에 이어 농축산업계 설 명절 현장 목소리 청취

- 2일 오후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설 명절 기간(1.17.~2.15.)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범위 내 가능

(‘24. 2. 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설 명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농협, 농축산 관련 단체 등 농축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협하나로마트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실제 농축산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었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간담회가 끝난 후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